

1. 도입 배경

- 고향사랑기부금제는 고향에 대한 의미 부여를 통한 기부문화의 장려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 하기 위해 도입됨
 - 특히, 수도권으로 인구유출과 그로 인한 지역경제 악화 그리고 지역활력의 저하라는 악순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돌파구로써 모색됨
-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시 재정 분권 과제의 일환으로 (가칭)「고향사랑 기부제법」 시행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됨
- 이후 2021년 10월 제21대 국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기부금법)』을 제정하여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11.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구조

-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기부자(국민),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해당 지역주민, 지방의회, 답례품 생산자, 중앙정부 등이 그 작동에 있어 상호작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 기부자는 본인의 주소지 외의 전국 모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하며, 법인은 기부가 불가함

 -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집·홍보·운영 및 사업추진을 함. 단, 기부강요 및 모금방법 위반 시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음
 - 지방의회는 기부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현안문제 해결과 지역균형발전의 효과누적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함 - 해당 지역주민은 고향사랑기부금제에 관심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호응해야 함
 - 답례품 생산자는 답례품 개발과 품질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함. 특히 품질유지는 기부유인의 중요한 요소가 됨
 - 중앙정부는 고향사랑기부금제의 관리 및 제도적 조정과 지역경제 활력의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해야 함
-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정치자금기부금제와 지역사랑상품권제(답례품)가 합쳐진 독특한 제도임
 - 정치자금법에 따라 기부금 10만 원은 소득세 신고 시 10만 원을 공제받는데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역시 10만 원을 돌려받음
 - 추가로 지방정부가 3만 원 이하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어 기부자는 최대 13만 원을 돌려받는 효과가 있음 - 즉, 답례품은 기부액의 30%까지 제공할 수 있고 세액공제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 16.5%를 공제함(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 개인 기부금의 연간한도액은 5백만 원이고 지방자치단체 모금한도액은 규정하지 않음

연도

Ⅲ. 일본 고향납세 제도의 활성화 사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 첫째, 재난재해에 대한 기부금의 증가임. 일본 고향세의 기부금 증가를 보면, 2011년의 동일본 재해에 따라 기부금액이

●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금제는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벤치마킹한 제도이므로 일본의 활성화 요인을 다음과 같이

- 대폭 증가함 -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 시구정촌)에 대하여 기부한 금액은 2008년 8,139백 만엔, 2010년 10,217백 만엔 이었으나,
- 2011년 동일본 재해 때 12,162백 만엔으로 크게 증가 ● 둘째,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및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임. 2015년 고향납세 공제액의 2배 확대 및 원스톱 특례제도를
- 시행하는 등 제도적 개선에 따라 크게 증가 - 2014년 기부금액은 38,852백 만엔에서 165,291백 만엔으로 대폭 증가
- 2020년 기준 기부 건수는 3,488만 건, 납세금액은 672,490백 만엔 임

주요내용

〈표 1〉 일본 고향납세 제도 경과

2008	고향세 납세세노 노입		
2009	홋카이도(北海道)에서 최초 실시		
2011	동일본 재해에 따른 기부금 증가		
	납세자 자비부담금을 5,000엔에서 2,000엔으로 인하		
2015	고향세 특례공제 상한액을 주민세 소득할액의 10%에서 20%로 인상		
	고향납세 원스톱 특례제도 도입 : 정기급여자의 확정신고서 제출 생략		
2016	지방창생응원세제 도입(기업판 고향납세)		
2019	고향납세 지정제도 신설 : 고향납세 지정기준 및 지방세법 상 지정기준 신설		
※ 출처: 신승근·조경희(2022), 고향사랑기부제 교과서, 농민신문사 참고작성.			
● 셋째, 답례품 제공에 따른 기부금액 증가임. 고향납세의 증가 요인에 대한 2017년 일본 총무성(2018)의 지자체			

(총 1,788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답례품의 충실

고향세의 보급, 정착

세수납부환경의 정비

납부, 전자신청)' 747단체(41.8%) 등의 응답을 보임 - 이중 '답례품 충실'의 답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일본 고향납세의 증가요인으로 기부금에 대한 반대급부의

- '답례품의 충실' 1,021단체(57.1%), '고향납세의 보급·정착' 1,020단체(57.0%), '세수납부환경의 정비(신용카드

- 영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함
- (단위: 단체수, %) 고향세 증가 이유 2016년 2017년 1,017지자체(56.9%)

999지자체(55.9%)

766TITL=11/42 Oo/ \

1,021지자체(57.1%)

1,020지자체(57.0%)

7/77|TL궤//11 00/ \

〈표 2〉 일본 고향 납세의 증가요인

(신용카드납부, 전자신청)	/00A A[M (42.8%)	/4/시자제(41.8%)		
홈페이지 등 홍보의 충실	588지자체(32.9%)	580지자체(32.4%)		
납세자 친화적인 세수행정 (원스톱 특례 제도 등)	791지자체(44.2%)	538지자체(30.1%)		
사용처, 사업내용의 충실	122지자체(6.8%)	169지자체(9.5%)		
지진재해 지원	42지자체(2.3%)	90지자체(5%)		
※ 출처:日本 総務省,"ふるさと納税に関する現況調査結果" 각 연도.				
Ⅳ. 고향사랑기부금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확한 조례 제정목표의 설정임

- 예를 들면 고향사랑기부금의 모집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지역경제 침 체를 회복할 수 있는 촉매제로서 조례제정 목표를 설정

둘째, 조례를 통한 투명한 사업운영 및 지역 현안사업 발굴·지원임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기여할 것임

내고장의 홍보 및 관광 등에 활용할 수 있음

• 고향사랑기부금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음

- 고향사랑기부금제는 기부금에 대해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11조) - 조례에는 기부금 운영 관리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함. 즉, 지원사업 공개, 기부자에 대하여 사업의 추진

– 이러한 목표설정은 기부자에게 지급하는 답례품과 관련하여 지역 내 다양한 향토산업 또는 전통산업을 활성화시켜

- 일정 경과보고, 사업성과보고 등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해야 할 것임 - 또한 활력있는 지역과 주민복리를 위한 지역현안 사업 발굴에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임. 예를 들면, 지역 내 1차산업 이나 지역특산물의 생산·제조 물품의 유통·판로·마케팅사업, 지역 내 환경보전, 관광, 문화, 스포츠, 교류·연계사업에
- 셋째, 기금 재원에 대한 일반재정 지원에 대한 고려임 - 고향사랑기부금은 결과적으로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게 개인부담이 증가하는 구조 - 지방정부의 사업실현을 위해 기부자의 기부에만 의존하는 것은 지방분권의 원칙에도 바람직하지 않음

- 지역 현안사업들에 대해 모집된 기부금에 지방재정 매칭을 하게 되면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 지방재정 재원확보에도

- 따라서 고향사랑기부금제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재정의 지원도 필요하며, 이에 대한 지방의원의 철학과 추진 의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함

내용문의: 이상범(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 lsb8972@hanmail.net)